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시행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총괄 및 전문기관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범부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 국가연구개발 관련 제재처분 제도 및 제재처분 재검토 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성과평가정책국에 평가대상조직으로 연구윤리권익보호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5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을 증원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을 신설하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국 하부기구의 명칭 및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설치·운영 중인 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0항제3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바이오·기초의과학기술·생명연구자원·뇌연구”를 “바이오·기초의과학기술·뇌연구”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중 “생명공학·뇌연구·생명연구자원을”을 “생명공학·뇌연구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제36호 중 “위성항법시스템”을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으로 하며, 같은 조 제14항제5호 중 “노형”을 “노형(爐型)”으로 한다.

제10조제8항제18호 중 “위성항법장치”를 “위성위치확인시스템”으로 한다.

제13조제3항제12호 중 “과학기술종합조정지원사업”을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 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0호를 제21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운영

제13조제5항제6호 중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를 “다부처협력특별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에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 구성·운영

제15조제2항 중 “성과평가정책과·평가심사과·연구제도혁신과 및 과학기술정보과를”을 “성과평가정책과·연구평가혁신과·연구제도혁신과·연구윤리권익보호과·과학기술정보분석과 및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을”로, “기술서기관”을 “기술서기관으로,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1호를 제4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1. 추적조사 세부지침 수립·운영

제1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평가심사과장”을 “연구평가혁신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4호부터 제2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34호 중 “과학기술 공적개발원조(ODA)”를 “국제협력”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7호부터 제4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7. 특별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8.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지침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39.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40. 전략계획서 수립지침 마련 및 점검

제15조제5항제7호 중 “간접비산출위원회”를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연구윤리·연구노트”를 “연구노트”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 중 “제도 도우미

센터”를 “관련 온라인 창구”로 하며, 같은 항에 제22호부터 제2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연구지원체계의 평가에 관한 사항

22. 전문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23. 전문기관의 지정, 지정해제, 운영효율화 요구에 관한 사항

24. 연구지원체계의 확립을 위한 시책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5. 연구지원에 관한 기준마련 및 권고에 관한 사항

26.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관련 의견 수렴 및 제안처리에 관한 사항

27.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 기본지침 및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

28. 국가연구개발 관련 교육·훈련 과정에 대한 기획 및 시행

29. 전문기관·연구개발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내부규정의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제15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6항) 제1호 중 “예측·분석에 관한 사항”을 “예측·분석”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제도개선”으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정보과장”을 “과학기술정보분석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국가연구자번호 발급·관리

16.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계획 수립 및 개선
 17.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18.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고시 제·개정 및 운영
- ⑥ 연구윤리권익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2.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의 기준 표준화에 관한 사항
 3. 국가연구개발사업 부정행위 검증·조치에 관한 사항
 4. 국가연구개발사업 부정행위 관리에 관한 실태 조사·분석
 5.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정보 조회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6. 국가연구개발사업 범부처 연구윤리 정책 수립·추진
 7.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윤리 정책 협력체계 마련 및 지원
 8.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윤리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개선
 9.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윤리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0.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윤리 관련 교육 및 홍보
 11. 국내외 연구윤리 규정·운영에 관한 실태 조사·분석
 12. 연구개발기관의 자체연구윤리 규정 관련 표준매뉴얼 발간·보급
 13.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4. 제재처분 재검토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5. 제재처분 재검토 관련 사실관계 조사
 16. 제재처분 재검토 심사 안건 작성에 관한 사항
 17. 제재처분 재검토 회의 수행에 관한 사항

18. 제재처분 재검토 심사 기준 마련

19. 제재처분 재검토 회의 결과 통계 관리

20. 제재처분 재검토 절차 관련 교육 및 홍보

21. 제재처분 관련 고충 처리 및 민원 대응에 관한 사항

⑧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에 위한 기술성평가가 계획 및 지침 수립

2.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에 위한 기술성평가가 실시

3.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및 기술성평가제도의 개선

4.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5.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및 수행 총괄지침 제·개정

6.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세부지침 제·개정

7.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및 관리

8.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9.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정책협의체 운영 및 수탁평가 대응

10.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의 지정·해제

11.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교육 및 홍보
 12.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 구성 · 운영
 1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계 관리 및 정책자료 개발
 14. 사전컨설팅지원단 구성 · 운영
 15.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온라인통합플랫폼 구축 · 운영
- 제16조제3항제4호 중 “수발 · 통제 · 보존”을 “접수 · 발송 · 통제 · 보존”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전파차단장치 인가를 위한 주파수 적정성 평가기준 제정 · 개정 및
관련연구
- 제17조제4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전파차단장치 인가를 위한 주파수 적정성 평가시험에 관한사항
- 제18조제2항제2호 중 “전리층 · 지자기”를 “전리층(이온화된 대기 영역) · 지자기(지구에서 자기권계면까지 형성된 자기장)”로 한다.
- 제19조제3항제4호 중 “수발 · 분류 · 보존”을 “접수 · 발송 · 분류 · 보존”으로 한다.
- 제20조제3항제4호 중 “수발 · 분류 · 보존”을 “접수 · 발송 · 분류 · 보존”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제도활동”을 “홍보활동”으로 한다.
- 제21조제5항제1호 중 “관인관수”를 “관인 · 관리대장 관리”로 한다.
- 별표 3 중 총계 “797”을 “804”로 하고,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46”을 “47”로 하며,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통계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보건사무관 · 사서사무관 · 기상

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수의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식품
위생사무관 · 항공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또는 연구관 “277”을 “280”으
로 하고, 행정주사 · 공업주사 · 통계주사 · 환경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
사 · 방송통신주사 · 사서주사 · 기상주사 · 농업주사 · 임업주사 · 수의주
사 · 해양수산주사 · 보건주사 · 의료기술주사 · 식품위생주사 · 항공주사
· 방재안전주사 또는 연구사 “224”를 “227”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799”를 “806”으로 하고,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46”을
“47”로 하며,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통계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
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보건사무관 · 사서사무관 · 기상
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수의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식품
위생사무관 · 항공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또는 연구관 “296”을 “299”로
하고, 행정주사 · 공업주사 · 통계주사 · 환경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 사서주사 · 기상주사 · 농업주사 · 임업주사 · 수의주사
· 해양수산주사 · 보건주사 · 의료기술주사 · 식품위생주사 · 항공주사 ·
방재안전주사 또는 연구사 “205”를 “208”로 한다.

별표 11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성과평가정책국 연구윤리권익보호과	1명 (4급 1명)	2023년 12월 31일까지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5조 중 “2021년 9월 11일”을 “2023년 9월 11일”로, “202
1년 9월 12일”을 “2023년 9월 12일”로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7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중 “2021년 9월 26일”을 “2023년
9월 26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
되는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은 2024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고, 2024년
6월 1일 이후부터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연구평
가혁신과장이 분장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연구개발정책실) ① ~ ⑨ (생 략)	제7조(연구개발정책실)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생명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⑩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u>생명연구자원 관련 기본계획</u> <u>수립 · 추진, 관련 법령 · 제도</u> <u>의 운영 · 발전 및 연구소재지</u> <u>원사업 등 연구개발사업 지원</u>	<삭 제>
4. · 5. (생 략)	4. · 5. (현행과 같음)
6. <u>생물다양성협약 관련 기술개</u> <u>발사업 추진 지원</u>	<삭 제>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u>바이오 · 기초의과학기술 · 생</u> <u>명연구자원 · 뇌연구 분야 전</u> <u>문연구인력 양성</u>	8. <u>바이오 · 기초의과학기술 · 뇌</u> <u>연구</u> ----- -----
9. ~ 12. (생 략)	9. ~ 12. (현행과 같음)
13. <u>생명공학 · 뇌연구 · 생명연</u> <u>구자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u>	13. <u>생명공학 · 뇌연구를</u> ----- -----
14. ~ 16. (생 략)	14. ~ 16. (현행과 같음)
⑪ (생 략)	⑪ (현행과 같음)
⑫ 거대공공연구정책과장은 다 음 사항을 분장한다.	⑫ ----- -----.
1. ~ 35. (생 략)	1. ~ 35. (현행과 같음)

36. 한국형 <u>위성항법시스템</u> 구축 관련 기본시책의 수립·시행 및 기술의 개발·지원	36. ---- <u>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u> -----
37. ~ 50. (생략)	37. ~ 50. (현행과 같음)
⑬ (생략)	⑬ (현행과 같음)
⑭ 원자력연구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⑭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차세대 <u>노형</u> 개발 및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	5. ---- <u>노형(爐型)</u> -----
6. ~ 26. (생략)	6. ~ 26. (현행과 같음)
⑮ ~ ⑲ (생략)	⑮ ~ ⑲ (현행과 같음)
제10조(네트워크정책실) ① ~ ⑦ (생략)	제10조(네트워크정책실)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네트워크안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
1. ~ 17. (생략)	1. ~ 17. (현행과 같음)
18. 우주전파재난 관리 및 <u>위성항법장치(GPS)</u> 혼신 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18. ----- <u>위성위치확인시스템</u> -----
19. · 20. (생략)	19. · 20. (현행과 같음)
⑨ ~ ⑮ (생략)	⑨ ~ ⑮ (현행과 같음)
제13조(과학기술정책국) ① · ② (생략)	제13조(과학기술정책국)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과학기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11. (생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국가과학기술종합조정체계의 운영·발전 지원 및 과학기술종합조정지원사업의 관리	12. -----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
13. ~ 19. (생략)	13. ~ 19. (현행과 같음)
<신설>	20.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운영
20. (생략)	21. (현행 제20호와 같음)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⑤ 과학기술정책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u>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u> 구성·운영	6. <u>다부처협력특별위원회</u> -----
7. 삭제	
8. ~ 25. (생략)	8. ~ 25. (현행과 같음)
<신설>	26.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 구성·운영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
제15조(성과평가정책국) ① (생략)	제15조(성과평가정책국) ① (현행과 같음)
② 성과평가정책국에 <u>성과평가정책과·평가심사과·연구제도혁신과 및 과학기술정보과</u> 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u>기술서기관</u> 으로 보한다.	② ----- <u>성과평가정책과·연구평가혁신과·연구제도혁신과·연구윤리권익보호과·과학기술정보분석과 및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u> 을 ----- <u>기술서기관</u> 으로, 연구개

③ 성과평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7. (생략)

28. ~ 33. 삭제

34.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지침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35. ~ 40. (생략)

<신설>

41. (생략)

④ 평가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삭제

2. ~ 7. (생략)

8.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기술성평가 계획 및 지침 수립

9.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기술성평가 실시

10.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한

발타당성심사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③ -----
-----.

1. ~ 27. (현행과 같음)

<삭제>

35. ~ 40. (현행과 같음)

41. 추적조사 세부지침 수립·운영

42. (현행 제41호와 같음)

④ 연구평가혁신과장-----
-----.

2. ~ 7.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u>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및 기술성평가 제도의 개선</u>	
11. ~ 13. (생략)	11. ~ 13. (현행과 같음)
14. <u>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 성조사 제도의 운영 및 발전 에 관한 사항</u>	<u><삭 제></u>
15. <u>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 성조사 운용지침 및 수행 총 괄지침 제·개정</u>	<u><삭 제></u>
16. <u>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 성조사 수행 세부지침 제·개 정</u>	<u><삭 제></u>
17. <u>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 성조사 수행 및 관리</u>	<u><삭 제></u>
18. <u>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 성조사 면제</u>	<u><삭 제></u>
19. <u>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 성조사 정책협의체 운영 및 수탁평가 대응</u>	<u><삭 제></u>
20. <u>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 성조사 수행기관의 지정·해 제</u>	<u><삭 제></u>
21. <u>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 성조사 관련 교육 및 홍보</u>	<u><삭 제></u>
22. <u>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자문 위원회 구성·운영</u>	<u><삭 제></u>

23. <u>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계 관리 및 정책자료 개발</u>	<u><삭 제></u>
24. <u>사전컨설팅지원단 구성·운영</u>	<u><삭 제></u>
25. <u>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온라인통합플랫폼 구축·운영</u>	<u><삭 제></u>
26. ~ 33. (생략)	26. ~ 33. (현행과 같음)
34. <u>국가연구개발사업 시설장비의 과학기술 공적개발원조(ODA)에 관한 사항</u>	34. ----- -- <u>국제협력</u> ----- -----
35.·36. (생략)	35.·36. (현행과 같음)
<u><신 설></u>	37. <u>특별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u>
<u><신 설></u>	38. <u>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지침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u>
<u><신 설></u>	39. <u>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u>
<u><신 설></u>	40. <u>전략계획서 수립지침 마련 및 점검</u>
⑤ 연구제도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u>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간접비 산출위원회 구성 및 운영</u>	7. ----- <u>간접비계</u> <u>상기준산출위원회</u> ----

8. <u>연구비 관리체계 평가계획수립 및 운영·개선</u>	8. <u>연구지원체계의 평가에 관한 사항</u>
9. (생략)	9. (현행과 같음)
10. 국가연구개발사업의 <u>연구윤리·연구노트</u> 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10. ----- <u>연구노트</u> ----- -----
11. ~ 15. (생략)	11. ~ 15. (현행과 같음)
16. 국가연구개발 <u>제도 도우미센터</u> 설치 및 운영	16. ----- <u>관련 온라인 창구</u> -----
17. · 18. 삭제	
19. ~ 21. (생략)	19. ~ 21. (현행과 같음)
<u><신설></u>	22. <u>전문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u>
<u><신설></u>	23. <u>전문기관의 지정, 지정해제, 운영효율화 요구에 관한 사항</u>
<u><신설></u>	24. <u>연구지원체계의 확립을 위한 시책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u>
<u><신설></u>	25. <u>연구지원에 관한 기준마련 및 권고에 관한 사항</u>
<u><신설></u>	26. <u>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관련 의견 수립 및 제안처리에 관한 사항</u>
<u><신설></u>	27. <u>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 기본지침 및 개선안 마련</u>

<신 설>

<신 설>

<신 설>

에 관한 사항

28. 국가연구개발 관련 교육 ·
훈련 과정에 대한 기획 및 시
행

29. 전문기관 · 연구개발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내부
규정의 개선 권고에 관한 사
항

⑥ 연구윤리권익보호과장은 다
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의 운영 · 개선에 관한 사항

2.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의 기준 표준화에 관한 사항

3. 국가연구개발사업 부정행위
검증 · 조치에 관한 사항

4. 국가연구개발사업 부정행위
관리에 관한 실태 조사 · 분석

5.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정보
조회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
항

6. 국가연구개발사업 범부처 연
구윤리 정책 수립 · 추진

7.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윤리
정책 협력체계 마련 및 지원

8.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윤리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개선

9.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윤리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0.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윤리 관련 교육 및 홍보

11. 국내외 연구윤리 규정·운영에 관한 실태 조사·분석

12. 연구개발기관의 자체연구윤리 규정 관련 표준매뉴얼 발간·보급

13.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4. 제재처분 재검토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5. 제재처분 재검토 관련 사실관계 조사

16. 제재처분 재검토 심사 안건 작성에 관한 사항

17. 제재처분 재검토 회의 수행에 관한 사항

18. 제재처분 재검토 심사 기준 마련

19. 제재처분 재검토 회의 결과 통계 관리

20. 제재처분 재검토 절차 관련

⑥ 과학기술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미래 기술 예측·분석에 관한 사항

2.·3. (생략)

4.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NTIS) 기본계획수립 및 구축·운영, 범부처 공동활용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 14. (생략)

15.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부여·관리

<신설>

<신설>

<신설>

<신설>

교육 및 홍보

21. 제재처분 관련 고충 처리 및 민원 대응에 관한 사항

⑦ 과학기술정보분석과장-----.

1. -----
-- 예측·분석

2.·3. (현행과 같음)

4. -----

-- 제도개선

5. ~ 14. (현행과 같음)

15. 국가연구자번호 발급·관리

16.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계획 수립 및 개선

17.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18.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고시 제·개정 및 운영

⑧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기술성평가 계획 및 지침 수립

2.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기술성평가 실시

3.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및 기술성평가 제도의 개선

4.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5.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및 수행 총괄지침 제·개정

6.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세부지침 제·개정

7.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및 관리

8.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9.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정책협의체 운영 및 수탁평가 대응

10.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의 지정·해

	<u>제</u> <u>11.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u> <u>성조사 관련 교육 및 홍보</u> <u>12.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u> <u>위원회 구성 · 운영</u> <u>1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u> <u>성조사 통계 관리 및 정책자</u> <u>료 개발</u> <u>14. 사전컨설팅지원단 구성 · 운</u> <u>영</u> <u>15.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u> <u>성조사 온라인통합플랫폼 구</u> <u>축 · 운영</u>
제16조(국립전파연구원) ① · ② (생 략) ③ 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 장한다. 1. ~ 3. (생 략) 4. 문서의 <u>수발 · 통제 · 보존</u> 기 타 문서관리 5. ~ 7. (생 략) ④ · ⑤ (생 략) ⑥ 기술기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2. (생 략) <u><신 설></u>	제16조(국립전파연구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3. (현행과 같음) 4. ---- <u>접수 · 발송 · 통제 · 보</u> <u>존</u> ----- 5. ~ 7. (현행과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⑥ ----- -----. 1. ~ 12. (현행과 같음) <u>13. 전파차단장치 인가를 위한</u>

⑦・⑧ (생략) 제17조(전파시험인증센터) ① ~ ③ (생략) ④ 사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7. (생략) <신설> ⑤ (생략) 제18조(우주전파센터) ① (생략) ② 우주전파센터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생략) 2. 태양흑점 폭발과 지구 대기권 밖에 존재하는 전자파에너지의 변화에 따른 <u>전리층·지자기 교란 등 우주전파환경에 대한 관측, 관측결과 분석·평가 및 예·경보에 관한 사항</u> 3. ~ 10. (생략) 제19조(중앙전파관리소) ①・② (생략)	<u>주파수 적정성 평가기준 제정·개정 및 관련연구</u> ⑦・⑧ (현행과 같음) 제17조(전파시험인증센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 7. (현행과 같음) 8. <u>전파차단장치 인가를 위한 주파수 적정성 평가시험에 관한 사항</u>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우주전파센터)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 ----- ----- <u>전리층(이온화된 대기 영역)·지자기(지구에서 자기권계면까지 형성된 자기장)</u> ----- 3. ~ 10. (현행과 같음) 제19조(중앙전파관리소) ①・② (현행과 같음)
---	---

③ 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 (생략) 4. 문서의 <u>수발·분류·보존</u> 기타 문서관리 5. ~ 10. (생략) ④ ~ ⑦ (생략) 제20조(위성전파감시센터) ①·② (생략) ③ 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 (생략) 4. 문서의 <u>수발·분류·보존</u> 기타 문서관리 5. ~ 9. (생략) ④ 위성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 (생략) 3. 무선국의 운용실태조사 및 혼신예방·불법사용방지 <u>제도 활동</u> 4. ~ 10. (생략) ⑤ (생략) 제21조(전파관리소) ① ~ ④ (생략) ⑤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③ ----- -----. 1. ~ 3. (현행과 같음) 4. ----- <u>접수·발송·분류·보존</u> ----- 5. ~ 10. (현행과 같음)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20조(위성전파감시센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3. (현행과 같음) 4. ----- <u>접수·발송·분류·보존</u> ----- 5. ~ 9. (현행과 같음) ④ ----- -----. 1.·2. (현행과 같음) 3. ----- ----- <u>홍보 활동</u> 4. ~ 10.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전파관리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분장한다.

1. 문서, 인사, 교육, 보안, 급여,

관인관수 및 직원의 복리후생

2. ~ 10. (생략)

⑥ ~ ⑩ (생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5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연구기관지원팀, 과학기술안전기반팀, 디지털포용정책팀 및 디지털인재양성팀은 2021년 9월 11일까지 존속하고, 2021년 9월 12일 이후부터 연구기관지원팀장, 과학기술안전기반팀장, 디지털포용정책팀장 및 디지털인재양성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연구성과일자리정책과장, 미래인재정책과장, 정보통신정책총괄과장 및 인공지능기반정책과장이 각각 분장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7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

1. -----

관인·관리대장 관리 -----

2. ~ 10. (현행과 같음)

⑥ ~ ⑩ (현행과 같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5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

----- 20

23년 9월 11일----- 20

23년 9월 12일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7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간) ① 이 규칙 시 행으로 신설되는 디지털소통팀 은 <u>2021년 9월 26일</u>까지 존속한 다. ② (생 략)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간) ① ----- ----- -- <u>2023년 9월 26일</u>----- --. ② (현행과 같음)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정원표(제27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총계	· <u>797</u>	· <u>804</u>	+7
· ·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 · · <u>46</u>	· · · <u>47</u>	+1
·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통계 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 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 관 · 보건사무관 · 사서사무관 · 기상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 사무관 · 수의사무관 · 의료기술 사무관 · 식품위생사무관 · 항공 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또는 연구관	· · <u>277</u>	· · <u>280</u>	+3
·	·	·	

행정주사 · 공업주사 · 통계주사 · 환경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 사 · 방송통신주사 · 사서주사 · 기상주사 · 농업주사 · 임업주사 · 수의주사 · 해양수산주사 · 보 건주사 · 의료기술주사 · 식품위 생주사 · 항공주사 · 방재안전주 사 또는 연구사 · ·	 <u>224</u> · ·	 <u>227</u> · ·	 +3
---	----------------------------------	----------------------------------	----------------------------

[별표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정원표(제27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총계	· <u>799</u>	· <u>806</u>	+7
· ·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 · · <u>46</u>	· · · <u>47</u>	+1
· ·	· ·	·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통계 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 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 관 · 보건사무관 · 사서사무관 · 기상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 사무관 · 수의사무관 · 의료기술 사무관 · 식품위생사무관 · 항공 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또는 연구관	<u>296</u>	<u>299</u>	+3
·	·	·	

행정주사 · 공업주사 · 통계주사 · 환경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 사 · 방송통신주사 · 사서주사 · 기상주사 · 농업주사 · 임업주사 · 수의주사 · 해양수산주사 · 보 건주사 · 의료기술주사 · 식품위 생주사 · 항공주사 · 방재안전주 사 또는 연구사 · ·	 <u>205</u> · ·	 <u>208</u> · ·	 +3
---	----------------------------------	----------------------------------	------------------------